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치수과)

의안번호	제 364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4. 11. 7.)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대형공사 및 주요 시설물에 적용하는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중소 규모 시민 이용 시설물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안전·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제2조)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대상 정비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신설

나. 위원회 구성, 해촉, 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1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

- 소위원회 심의·의결 기준 신설
- 다. 수당 및 검토비에 대해 규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음
 - 기간: 2024. 9. 19. ~ 2024. 10. 10. (21일간)
 -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나, 대형공사 및 주요 시설물에 적용하는 검증체계를 중·소규모(100억 미만) 시설물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표준조례안(2023. 12. 14.)을 바탕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법 제6조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²⁾에 따

1)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2)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③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

라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
시하였으며,

▶ 안 제2조(설치 및 기능)에서는 기존 ‘자문’ 기능에 ‘심의·의
결’ 을 추가함.

- 제2항제1호: 심의·의결 사항으로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
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제2항제2호부터 7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³⁾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

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
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④ 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3)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
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
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
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
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
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에 부치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 현행법상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만 설계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시설물이 제도상 관리대상에서 누락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안 제3조(구성)에서는

- 위원회 구성: 15명 이내 → 15명 이상 30명 이내
- 위원 위촉방법: 구청장 위촉 또는 위촉 →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임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 한 차례만 연임

▶ 안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상위법령(영 제22조)4에 맞추어 변경

4)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 ▶ 안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상위법령(영 제20조제1항)⁵⁾에 따라 변경
- ▶ 안 제6조(직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 안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

5)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 안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전부개정 전 조례와 내용 같음
- ▶ 안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위원회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고,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명시함
- ▶ 안 제10조 ~ 제12조(소위원회): 기존 제9조를 안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로 변경하여 소위원회의 구성(5명이상 20명 이하)과 회의 소집, 심의·의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
- ▶ 안 제13조(의견 청취 등) 「건설기술관리법」(1987. 10. 24.)이 2014 년 5월 23일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일치시킴.
- ▶ 안 제14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기존 제11조 결과보고를 구체화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명시함.
- 본 전부개정안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 고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여 중·소규모(100억 미만 건설공사)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및 신설된 조항들 은 조례로 위임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